##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3

제출연월일: 2016. 1.

제 출 자:동작구청장

#### 1. 제안이유

임금 및 대금의 체불 제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급확인시스템(대금 e바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금 e바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법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비 및 조문정리(안 제1조 및 제9조제3호)
- 나.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 및 활성화 방안 명시로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 2)
- 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합(안 제10조제2항)
- 마. 상위법 인용 법조항 정리(안 제10조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기관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11. 17. ~ 2015. 12. 07.

2) 규제심사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책임감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 제1조(목적) ----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워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 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의 건전한 발 -----경제의 건전한 발 전과 명품동작 건설에 이바지함을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6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신 설〉 (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 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 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 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 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말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
|              |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
|              | 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   |
|              | 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
|              | <u>경우</u>            |
|              |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  |
|              |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
|              |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
|              | <u>인정하는 경우</u>       |
|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
|              |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   |
|              | 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   |
|              | 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  |
|              | 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
|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
|              |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   |
|              | 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  |
|              | 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   |
|              | 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   |
|              | 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④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  |
|                           | 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 |
|                           | 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
|                           |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   |
|                           | <u>야 한다.</u>        |
|                           |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
|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
|                           | <u>본다.</u>          |
|                           |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
|                           |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  |
|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 관 |
|                           | 리시스템 등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  |
|                           | 계할 수 있다.            |
|                           |                     |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제9조(주계약자공동도급제)      |
|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        | (현행과 같음)            |
| 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        |                     |
| 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                     |
| 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1. (현행과 같음)         |
|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3                   |
| 적용이 <u>부적당하다고</u> 인정되는 경우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                           |                     |
|                           |                     |
|                           |                     |

| 쳙 | 헝 |
|---|---|
|   |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 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 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 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 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u>제31조제2항</u>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 정 안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 2   | 건설공사의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
|-----|-------|--------------|
| -   |       |              |
| -   |       |              |
| -   |       |              |
| 3)- | 법 저   | 31조제1항에      |

③-----법 <u>제31조제1항에</u>-**----**